

로덴노인복지센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 1)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 갱신 및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다.
- 2)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 내용 및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한다.
- 3)노인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계약 목적

- 1)지역사회의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재가복지서비스를 통하여 방문요양(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 지원) 방문목욕, 지역사회 연계 등의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안정적인 삶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2)급여제공 계획서의 장기요양 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수급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급여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 계약 당사자

수급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수급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타사유로 계약을 이행 하기 어려운 경우 신원 인수인으로 가족이나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수급자의 지정인 등을 계약 대리인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라. 급여 제공 시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상호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장기요양 급여 이용 변경사유서 또는 장기요양 급여 이용 변경계약서 등을 통해 급여 제공시간 및 횟수 등 을 조정할 수 있다.

마. 급여 제공 내용

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한다.

- 1)식사도움, 개인위생 관리(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몸 씻기 등)
- 2)이동도움(체위변경, 이동도움, 보장구 사용도움,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화장실이용하기 등)
- 3)인지활동 지원(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 4)인지관리지원(인지행동변화 관리 등)
- 5)정서지원(말벗, 격려, 위로, 의사소통 도움 등)
- 6)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식사준비, 설거지, 수급자의 생활공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산책, 생활물품 구입, 관공서, 병원 이용 동행, 그 외 외출 시 동행 등)
7)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사. 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의 2(급여 외 행위의 제공금지)에 따라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아래와 같은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청소, 김장, 제사 준비, 명절음식 준비, 집안 경조사 지원, 가족을 위한 관공서 방문 등 업무지원 등
- 2)수급자 및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가게보기, 부업참여,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음식 준비 및 설거지 등
- 3)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텃밭매기, 잔디 깎기, 수급자의 여행 등

아.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1)본 기관에서 급여 제공으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2)비 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하며 별도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3)급여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와 비 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6%(보험료 순위 0~25% 이하), 9%(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등 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급여비용 부담 세부내역

구 분	금액(원)	내 역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85%(일반) 91%(감경대상자) 94%(감경대상자) 100%(기초수급자)	급여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뺀 100% 중 85%~100%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지급됨
본인 부담금 (건강보험료 순위 기준)	15%(일반)	건강보험공단 85% 부담, 본인 부담금 15%
	4%(감경대상자)	건강보험공단 91% 부담, 본인 부담금 9%
	6%(감경대상자)	건강보험공단 94% 부담, 본인 부담금 6%
	0%(기초수급자)	건강보험공단 100% 부담, 본인 부담금 0%

- 4)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월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이용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관에서 정한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 등급외자의 경우 선납으로 한다.
- 6)본인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방문 또는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을 발부한다.

7)2025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①월 본인한도액(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급여에 한함)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한도액(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 단,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센터 이용만 가능함.

②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제공시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수가(원)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 단, 평일 오후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심야)에 급여를 제공할 경우 수가의 30%를 가산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의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할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하여 청구한다.(일요일은 30% 가산됨)

※ 3,4등급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 할 수 있다.

※ 1,2등급 중증 수급자에 한하여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 할 수 있다.

③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목욕방법	차량 내 목욕		차량이용(가정 내)		차량 미 이용	
제공시간	40~60분	60분 이상	40~60분	60분 이상	40~60분	60분 이상
수가(원)	69,180	86,480	62,370	77,970	38,950	48,690

※ 본기관은 방문목욕 차량 미 소유 기관으로 차량 미 이용 수가에 준하여 급여 제공 가능함.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1)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계약 내용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권리
- ②기관의 급여 제공내용에 대한 알 권리
- ③수급자의 상태변화나 욕구변화에 따른 상담 및 상담내용의 급여내용 반영을 요청할 권리

2)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월 이용료 납부 의무
- ②장기요양 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의무(부당한 요구 금지 의무)
- ③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의무
- ④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한 정보 제공 의무(전염성 질환, 정신질환 보유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 ⑤수급자의 신변,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등급인정서 재발급,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등이 재 발급된 경우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⑥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3)장기요양 기관의 의무

- ①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의 의무
- ②급여 제공 중 어르신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할 의무

- ③급여제공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급여제공직원의 업무 수행도 확인 및 점검 의무
- ④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개인정보 누설 금지의 의무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함)
- ⑤이용관련 상담, 지역자원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의무
- ⑥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의무
- ⑦수급자의 가정 내 집기류 분실, 파손 방지 또는 수급자 부상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해당 직원 교육 의무
- ⑧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대한 협조 의무 (단, 수급자와 관계없는 요청은 거절 할 수 있음)

3. 계약의 해지

가. 계약해지 요건

- 1)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①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②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③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요양보호사를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④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①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 되거나 입원, 사망, 타 기관 입소한 경우
 - ②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③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④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급여 이용이 어려울 때
 - ⑤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급여 제공에 지장을 줄 때
 - ⑥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외출 등의 사유로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 ⑦매월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특별한 사유 없이 6회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 ⑧그 외에 시설장이 급여제공 중단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할 경우

나. 계약의 해지

- 1)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알려야 한다.
- 2)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